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공직선

거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9. 19. 2008고합475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정진기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5인

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을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5,000,000,000원에 처한다.
- 2.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,000,000원에 처한다.
- 3. 피고인이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,0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,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- 4.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.
- 5.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- 6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의 점은 무죄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